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제안이유

-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국립공원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시설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(산림청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조정한 금액)와 유사한 수준으로 징수할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경영합리화.

□주요골자

- 시설사용료의 상향조정

□근거법령

-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

□첨 부

1.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 대비표
3. 관련법규 발췌 1부.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<별표2> 시설사용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2>

시설사용요금표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사용기간	요 금	비 고
주 차 료	소, 중형차량 (승용, 봉고차)	1대/1일	2,000	※ 1일 사용료는 익일 11시 까지로 하며 11시 이후는 추가요금 징수
	대형차량 (버스, 화물차)		4,000	
산 막 (통나무집)	4인용	1동/1일	20,000	
	5-8인용		30,000	
	9-14인용		35,000	
	15인이상		40,000	
캠프화이어장		1회사용	20,000	앰프시설 포함
오토캠프장		개소/1일	4,000	주차 및 야영 4-5인용 텐트1조
야 영 장		개소/1일	2,000	야영 4-5인용 텐트1조
정 자	소형(2평미만)	개소/1일	2,000	
	대형(2평이상)		5,000	
평 상	소형(2평미만)	개소/1일	1,000	
	대형(2평이상)		2,000	
눈 썰 매 장			2,000	썰매대여 포함
			3,000	
테 니 스 장	1면당	시간/당	3,000	
강 의 실		1동/1일	50,000	
단 체 숙 소		1동/1일	80,000	
샤 워 장	어른 학생	1회사용	500	※ 징수방법은 자진납부함을 설치 하여 납부.
			300	